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1일, 박해철의원 등 2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사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8차 전체회의(2025. 11.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해철의원)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감리완료보고서 허위 작성 등 감리인의 업무 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부실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감리인의 업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을 명시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해체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시정과 작업중지요청 조치에 대해 불이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제31조제4항, 제49조제3항제10호 및 부칙 제2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제4항 및 제49조제3항제10호 중 “작업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를 “시정 또는 중지조치 요청을 이유로”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인한 <u>작업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u> ·지체나 그 밖에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u>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u>시정 또는 중지 조치 요청을 이유로</u> ----- ----- ----- ----- ----- ----- ----- --.
제49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4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49조(과태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한다.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1. ~ 9.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9. 제30조제5항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u>	
<u><신설></u>	<u>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인 한 작업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u>	10. ----- ----- ----- -- <u>시정 또는 중지조치 요청을 이유로</u> ----- ----- ----- ----- -----
<u>9. (생략)</u>	<u>11. (현행 제9호와 같음)</u>	11. (개정안과 같음)
<u>④ · ⑤ (생략)</u>	<u>④ · ⑤ (현행과 같음)</u>	<u>④ · ⑤ (개정안과 같음)</u>
<u>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u>	<u>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u>	<u>⑥ (현행과 같음)</u>

<u>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 건법」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해당 석 면조사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부 칙</u> <u>이 법은 공포 후 1년</u> <u>이 경과한 날부터 시</u> <u>행한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1년이</u> <u>경과한 날부터 시</u> <u>행한다.</u> <u>제2조(벌칙에 관한</u> <u>경과조치) 이 법</u> <u>시행 전의 행위에</u> <u>대하여 벌칙을 적</u> <u>용할 때에는 종전</u> <u>의 규정에 따른다.</u>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의4제1항제2호 중 “제38조의5제1항에”를 “제124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체에게”를 “판단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8조의5제3항에”를 “제124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수에”를 “준수 등에”로 한다.

6.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이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제거업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6제1항제5호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나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2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다”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9. 제30조제5항의 교체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

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감 리인 지정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0조(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감 리인 지정 등) ① ~ ④ (현행 과 같음) <u>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 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 체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한 경우</u> <u>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위 반사항에 대해 석면해체 · 제 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 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u> <u>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 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u>

⑤ (생략)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	4.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u> 5.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124조 제1항에----- ----- ----- - 3. ~ 5. (현행과 같음) 6. <u>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 -----판단
---	---

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
다)

2. (생략)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

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
체·제거업자 등에게-----

-----, 이 경
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
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1. -----시정

2. (현행과 같음)

3. -----제124조
제3항에-----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준수 등에-----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

-----.

1. ~ 4. (생략) 5. 2년에 <u>3회</u>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 ③ (생략)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2회</u>-----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u>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u>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u>석면해체 · 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u>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u>석면해체 · 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u> 10. <u>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u> 11. <u>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u>
---	--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
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
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
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
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
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나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
다.

제47조의2(벌칙) -----

-----500만원-----
-----.

제4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0조제5항의 교체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
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석

9.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u>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